

지정검역물의 운송·입출고·보관관리 기준(제36제3항 관련)

1.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

가. 살아있는 수산생물 운송차량

- 1) 운행 중에 누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- 2) 지정검역물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간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칸을 막아야 한다.
- 3) 수조 칸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- 4) 수조 칸별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.

나. 그 밖의 운송차량

- 1)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,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2) 운송용기는 태양광선·비·눈 등으로부터 검역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하며,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 등이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.

다. 공통: 운송차량은 전면 또는 측면에 수산생물 지정 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역물은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.

2. 지정검역물의 입출고·보관관리기준

가.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·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명,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나.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, 입고일시,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다.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라.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